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박 운항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신설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1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선박 운항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신설	3
2. 측정 불응 시 해기사 면허 취소, 효력 정지 등 규정	9
3. 약물운항에 대한 측정 불응 및 재위반 시 벌칙 등 규정	13
4. 부칙 규정	18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1일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선박 운항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생략)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

<신 설> <신 설> <신 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투약등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	--

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0조제1항을----- ----- -----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0조에서는 약물·환각물질¹⁾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①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②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 ③선박의 도선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함(첨부1 참고)

□ 이에 개정안은 ①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 운항을 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등 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항은 음주운항만큼 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금지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약물운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특히, ①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 음주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측정근거 및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를 두고 있어 약물운항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어 온 점, ②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약물의 영향 하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해상교통 영역에서 동일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첨부2 참고).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①대상물질, ②측정 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조정이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대상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측정주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측정조건	1.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약물·환각물질 영향 하에 운항을 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 가 발생한 경우	약물의 영향 하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측정방법	1.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1.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측정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다시 측정 가능

- 특히,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검사의 방법을 예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타액 간이 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 하위 법령에서 그 방법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간이시약검사는 간단한 화학적 시약을 사용해서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 소변, 타액 등을 이용하는데, 현재 타액 간이시약검사가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타액 간이시약검사’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개정안 제40조제4항과 관련하여 약물의 영향 하에 있는 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성·음성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의 경우²⁾ (김상훈 의원안, 대안반영 폐기) 발의 당시에는 동일한 규정이 있었으나 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동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2) [22075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 측정 불응 시 해기사 면허 취소, 효력 정지 등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약물·환각물질 투약등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 ----- ----- -----

<u><신 설></u>	-----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u>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u> <u>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u> <u>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u> <u>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u> <u>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u> <u>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u> <u>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u> <u>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u> <u>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u> <u>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u> <u>아니한 경우</u>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 제42조 각 호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술과 관련해서는 ①-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①-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약물·환각물질과 관련하여서는 ②-1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약물 등에 대해서도 측정 의무가 부여된 바,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취소(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의 요청 사유로 측정 불응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측정 관련 규정의 근거 마련에 따라 필요한 정비사항이라고 보여짐.

□ 다만, 현행법은 해기사의 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음주, 약물 영향 하에서의 도선 행위와 관련하여 도선사의 면허취소에 관해서는 「도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선법」 제9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공백이 있게 됨.

- 현행법 제42조제2호 및 제3호와 「도선법」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보더라도 음주 및 약물 등 운항으로 인한 도선사 면허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도선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³⁾

3) 「도선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선법을 별도로 개정하거나 이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타법 개정(부칙)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현행 음주·약물 관련 의무 및 제재규정 근거 법률

	해기사(음주)	해기사(약물)	도선사(음주)	도선사(약물)
의무 규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면허의 취소 등)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도선법	도선법
측정 불응 시 제재규정 (면허의 취소 등)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도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 참고로, 개정안 제42조제4호의 경우 안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①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안 제40조제2항제1호), ②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안 제40조제2항제3호)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약물 등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했다고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것은 과잉처분의 소지가 있고, 해양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결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3. 약물운항에 대한 측정 불응 및 재위반 시 벌칙 등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약물운항에 대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불응 시 처벌기준 및 약물운항 금지 규정 재위반 시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벌칙) ----- ----- ----- -----.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

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u>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u>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u> 제117조(양벌규정) ----- ----- ----- -----제113조까지, 제113조의 2,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 ----- ----- ----- -----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2조에서는 약물운항과 관련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약물운항에 대한 측정요구 불응과 관련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약물운항 금지 규정 및 측정요구 불응 규정 재위반 시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약물운항 금지 및 측정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약물운항을 근절하고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약물운항	1회 위반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현행과 같음)
	10년 내 재위반	-	2~6년 징역 또는 2~4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회 위반	-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10년 내 재위반	-	1~6년 징역 또는 1~4천만원 벌금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개정안은 ①‘약물운항’ 후 다시 ‘약물운항’을 한 자나,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 후 다시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한 자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약물운항’ 후

재차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한 자 및 ‘약물운항 시 측정 불응’ 후 재차 ‘약물운항’한 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필요하다는 의견과 ②개정안에서는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회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문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최근 개정되면서 ‘약물운전’ 또는 ‘약물운전 시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운전’ 또는 ‘약물운전 시 측정 불응’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다만, 현행법에서 ‘음주운항’과 관련한 벌칙은 해당 구조와 상이하고, 개정안과 같은 구조로 동일한 행위 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 바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구조로 가려면 현행법의 음주운항 관련 벌칙 규정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부칙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적 수용성 향상 및 단속 준비 등을 위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약물운항 및 약물운항 시 측정 거부 등의 경우에 면허취소 등 행정 제재와 관련하여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1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숨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화학물질관리법」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 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 2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비교

□ 약물운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유사하게 개정 중(25.3.13 국회 통과)이며, 두 개정안 간 비교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대상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측정주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측정조건	1.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약물 · 환각물질 영향 하에 운항을 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물의 영향 하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방법	1.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1.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면허처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1년 내)	운전면허 취소																										
벌칙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처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약물 운항</td><td>1회 위반</td><td>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td></tr> <tr> <td>10년 내 재위반</td><td>2~6년 징역 또는 2~4천만원 벌금</td></tr> <tr> <td rowspan="2">측정 불응</td><td>1회 위반</td><td>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td></tr> <tr> <td>10년 재 재위반</td><td>1~6년 징역 또는 1~4천만원 벌금</td></tr> </tbody> </table>	구분		처벌	약물 운항	1회 위반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10년 내 재위반	2~6년 징역 또는 2~4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회 위반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10년 재 재위반	1~6년 징역 또는 1~4천만원 벌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처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약물 운전</td><td>1회 위반</td><td>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td></tr> <tr> <td>10년 내 재위반</td><td>2~6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td></tr> <tr> <td rowspan="2">측정 불응</td><td>1회 위반</td><td>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td></tr> <tr> <td>10년 재 재위반</td><td>1~6년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td></tr> </tbody> </table>	구분		처벌	약물 운전	1회 위반	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	10년 내 재위반	2~6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회 위반	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	10년 재 재위반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구분		처벌																										
약물 운항	1회 위반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10년 내 재위반	2~6년 징역 또는 2~4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회 위반	3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																										
	10년 재 재위반	1~6년 징역 또는 1~4천만원 벌금																										
구분		처벌																										
약물 운전	1회 위반	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																										
	10년 내 재위반	2~6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회 위반	5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 벌금																										
	10년 재 재위반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